

기 안 용 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제 415- (건화번호 75.6523)	전 권 규 정	결 조 사항
처리기간	108 시		
시행일자	결재 1977.2.01		
보존년한			
보조기관	제2부118 전 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	협	법무담당관 (공보실)
기안책임자	김광선 77.1.28 김기현 77.2.5		
경수참조	각 안 참조	발 고	검열 1977.2.1
제 목	도시계획사업(운동장) 준공		
제1안 내부 결재.			
1. 풍문구청장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고시 제 340호(76.12.16)로 도시계획사업(운동장) 실시계획이거된 풍문구 구기동 15의 3번지에 대하여 별첨준공보고 및 준공검사조서와 같이 준공보고가 있기에			
2. 별첨 도시계획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과 대동령령 제 775호(75.8.22) 행정각관 위원회 위촉에 관한 규정에서 별첨과 같이 공고하고 준공검사를 고문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
현부 준공보고 및 준공검사조서 1부			
제2안	준공안심사 1977.2.1 제 2호		
공고(안)	심 자 자		
서울특별시 공고 제	전 결		
도시계획사업(운동장) 완공공고			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340호 (76.12.16)로 실시계획인가
된 도시계획사업(운동장)이 완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
동법 제43조와 행정관규 제11호 제4항에 관한 규정 제25조에
의하여 다변과 같이 공고한다

2. 관계로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국 도시계획과 및 종로
구청 시변물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재자와 인·해관계인에게
모이게 합니다

1977. 2.

서울특별시 강

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1의 3필지
2. 사업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 사업 (운동장)
3. 사업시행면적: 2,370.2 평 (7837² m²)
4. 사업시행자: 종로 동무로 수가 125-1

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용 화

5. 사업기간: 76.7.6 ~ 76.12.31

6. 준공도면: 준공도면 생략

7. 검사연월일: 77. 1.
제3안

준공검사증 (안)



1. 사업시행지: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1의 3필지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 사업 (운동장)
3. 허가번호 및 원시: 서울특별시 고시 제340호 (76.12.16)
4. 시행 면적: 2,370.2 평 (7837² m²)
5. 사업시행자: 종로 동무로 수가 125-1

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용 화

6. 준공도면: 별첨

키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43조 제3항에 의하여 도시계획
사업(운동장)이 별첨도면과 같이 완공하였으므로 본증을
교부함

1972. 1

서울특별시

제4안

수신: 중구 풍무로4가 125-1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동화

제목: 같은건

귀하께서 신청하신 도시계획사업(응동강)이 별첨과 같이
주공되어 이에 주공권사증을 교부합니다.

첨부 1. 주공권사증 1부 및 도면

2. 공고문 사본 1부

제5안

수신: 풍문구청장

제24안

참조: 시민봉사실감 토목과장 사무과장 도시계획과장

제목: 같은건

1. 서울특별시 기이 제340호 (76.12.16)의 관련일

2. 당시도시계획사업(응동강) 실시계획인가된 풍문구

구가를 151의 3월지에 대하여 별첨 공고문 사본과 같이 공사
완료되었음을 통보하니 재반함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.

첨부: 공고문 사본 및 주공권사증 사본 1부

제6안

수신: 풍문구청장 (시: 문화공보과)

제목: 관(11)보 개재취역

다음과 같이 관(11)보 개재를 위촉하오니 개재하여 주시
기 바랍니다.

가. 관(11)보 개재구분: 공고

나. 관(11)보 개재거명: 도시계획사업(응동강)완공

다. 법적근거: 도시계획법 제46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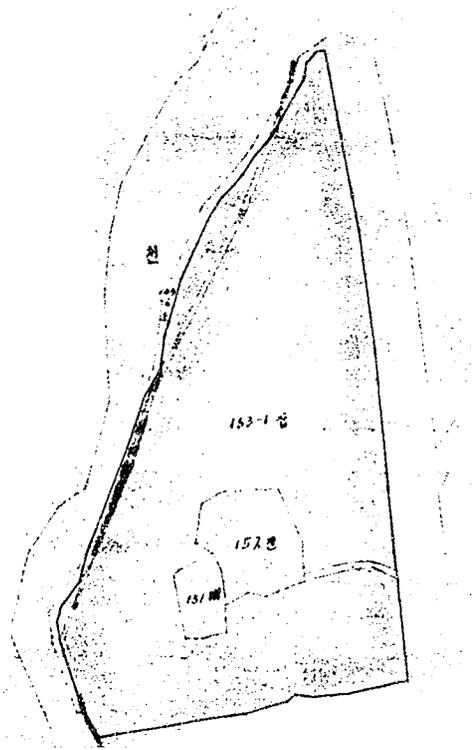
첨부: 공고문 사본 2부 (1부) 불

현황 특량도

서울특별시 중 로구우기동 153 번지

지적(답지)도 제 7-2 호
 면적 1,000

4



속

지적(답지)도 제 7-2 호

본 도면은 주당에 사용허락함

서기 1976년 10월 26일

660

서울특별시 중 로구우기동

